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18

2026년 제4회 근로자(보호경비원, 휴직대체) 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4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호경비원	**여 1명**	· 외국인 보호실 경비 · 보호외국인 계호 및 업무지원 · 기타 기관장 지시사항

2. 근무 조건

채용직종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후생복지
기간제 근로자 (보호경비원)	계약일로부터 ~ 27. 3. 31. (**육아휴직대체**)	○ 교대근무: 주간(1주차)-야간(2주차)-야간(3주차) - 주간(1주차: 월·화·수·목·금) 8:00~18:30 - 야간(2주차: 월·수·금·일*) 18:30~익일 8:00 - 야간(3주차: 화·목·토*) 18:30~익일 8:00 *토·일 8:00~익일 8:00	○ 월 300만원 상당 (정액급식비 포함, 세액공제 전) * 별도 지급 - 휴일근무수당 - 명절휴가비 - 맞춤형복지비 ○ 4대 보험 가입

※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불가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단출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검토 후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급여변동 가능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 **여성**

❍ 근무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한국공항공사「보호구역출입증규정」제11조(출입증 발급제한 등)에 의한 출입증 발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입증 발급제한

제11조(출입증 발급제한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통보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규출입증 사용 정지 및 발급을 제한하고 출입증을 회수한다. 단, 신원특이사항이 해소된 것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시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삭제
4. 삭제
5.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위반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사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처분이 미확정 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건에 한해 인정)

우대사항 기준

ㅇ 중국어 공인시험성적 소지자 우대(5~10점)

구분	5점	10점
중국어	신 HSK 5급 180점 이상 SNULT 5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	신 HSK 5급 210점 이상 SNULT 60점 이상 FLEX 75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성적 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ㅇ 무도자격증 소지자 우대(6~10점)

구분	2단(6점)	3단(8점)	4단 이상(10점)
무도	태권도(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함		

❍ 각 우대사항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증명서*와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근무시간(상근·비상근 여부 포함),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9)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건에 한해 인정)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가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산점 적용】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가산하되, 각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 지원**할 경우: 연령 등 공통 응시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일 경우, 합격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최종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평가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비고
채용공고	'26. 11. 6.(금) ~ '26. 11. 13.(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각종 사이트 공고
응시원서 접수	'26. 11. 11.(수) 9:00 ~ '26. 11. 13.(금) 18:0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층 행정지원팀
서류전형	'26. 11. 18.(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6. 11. 19.(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6. 11. 23.(월)	
최종합격자 발표	'26. 11. 24.(화) 예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통보
채용후보자등록 등	'26. 11. 25.(수) ~ '26. 11. 26.(목) 18:00 예정	
채용 예정일	'26. 11. 30.(월) 예정	※ 서류검증 및 결격사유 확인 기간에 따라 채용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최종합격자 공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게시예정

6.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2. 제출서류 확인: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등
3. 우편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표기(예시 - 응시원서 서류 재중)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교부(불합격자 별도 회신 없음)

○ 접수처: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2층 행정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층 행정지원팀 (우: 6315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공통서류

▸ 제출서류 총괄표(붙임1)

▸ 응시원서(붙임2)

▸ 이력서(붙임3)

▸ 자기소개서(붙임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5)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7)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붙임8)

▸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 제출서류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9)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점 증명서류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가 불가하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은 지정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0)"를 작성하고 접수처에 제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 일정기관 보관됨)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채용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할 경우, 후순위 득점자를 별도의 추가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관련 문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행정지원팀 채용담당자(064-741-54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보호경비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자격증, 경력증명서, 가점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서류 목록의 **제출여부란 '□'에 표시(√)**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성명 : (서명)

【붙임2】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26년도 제4회 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무효 처리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보호경비원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응시분야	보호경비원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명을 '( )'안에 기재

   - **복수국적 여부 반드시 체크**

5.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붙임3】

이 력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본인)	(비상시 연락처)	
이 메 일			

	기 간	근 무 처	직위(급)	업 무 내 용
경력	~			
	~			
	~			
	~			
	~			
	~			
	~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기 관
자격 및 면허	. . .		
	. . .		
	. . .		
	. . .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필 또는 면제사유
병역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붙임4】

□ 자기소개서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채용 예정 업무에 대한 이해,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3. 작성 시 출신 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또는 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 서명은 반드시 자필(한글 정자)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도 제4회 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 서명은 반드시 자필(한글 정자)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8】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9】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